## 「건설산업기본법」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변경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위반 업체의 행정처분(영업정지) 변경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02일

## 경기도지사

업체명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 <del>종</del> (등록번호)	처 <del>분내용</del>		· 당초 처분사유	근거법령 및
			변경 전	변경 후	3소 시판사파	변경처분사유
이 <u>룸종</u> 합건설㈜ 이**	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새싹길 58, 3층(건건동)	건축공사업 10-2542	영업정지 4개월 (2020.09.07. ~ 2021.01.06.)	영업정지 3개월 15일 (2020.09.07.~ 2020.12.22.)	건설업등록기준미달 (2018년말 자본금)	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대표자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